

#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 ⑦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글 쓰는 순서

## II. 건설관련 법령 벌칙규정

### 1. 벌칙의 종류

###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벌칙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식의 벌칙

- 1) 하도급법 적용범위
- 2) 하도급법령상 벌칙구조
- 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 지난 호
- 4)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위반
- 5)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기타사항 이번 호

### 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침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 2) 정부시설공사 입찰무효사유
- 3)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결정사유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 다음 호

-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5)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기타사항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	법제14조 법제25조제1항 법제25조의3제1항제4호	• 시정조치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
② 서류보존의무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수급사업자	법제3조제3항 법제25조의3제1항제2호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이하 과징금
③ 비밀엄수의 의무 ■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법제27조제3항 법제2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④ 공정위의 시정조치 미이행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제25조제1항, 제2항, 제4항 법제30조제2항제2호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견청취 관련 ■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의2제1항제1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법제30조의2제1항제2호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반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p>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 법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li> </ul>	<p>법제30조의2제1항제3호</p> <p>법제30조의2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천만원 이하 과태료</li> <li>• 100만원이하 과태료</li> </ul>

## 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기본지침

-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 나. 하도급법상의 시정조치(경고 포함)를 함에 있어 위반사업자에 대한 다른 제재조치 및 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다. 이 지침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등 과징금액 산정기준은 일반기준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경제여건, 범위반행위의 과정 및 행태, 포상실적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3. 세부지침

#### 가. 범위반관련 미지급금액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 가.(3)나의 범위반관련 미지급금액은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선급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제10조에 의한 부당반품 관련금액, 제11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금액, 제13조에 의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관련 미지급액,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대상 미지급액, 제15조에 의한 관세 미환급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액, 제16조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미조정금액 및 지연이자·어음할인료 관련 미지급액 등을 말한다.

#### 나. 과징금 부과율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 2. 다.(1)의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과 같다.

과 징 금 부 과 율	점 수 수 준				
	80점 초과	70점 초과 80점까지	60점 초과 70점까지	50점 초과 60점까지	50점까지
	7%	6%	5%	4%	3%

**다. 과징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2항에 의한 감면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이 반복되는 산정된 과징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 ② 고의로 범위반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 위 과징금 부과율 (3.나)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100% 까지로 할 수 있다.
- ③ 당해 위반업체가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과거 1년간 범위반실적이 없거나 과거 3년간 조치 유형별 점수수계가 4점 미만인 경우
  - 위반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의 1% 미만인 경우
  - 산정된 과징금액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원사업자가 해산·폐업 또는 부도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과징금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부 칙**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1. 5. 17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2001. 5. 17 이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1999. 4. 17 개정)을 적용하고, 2001. 5. 18 이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 3. 기 타  
과징금 금액의 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불이익 처분**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 의의 :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 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관련조문 :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 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

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사.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 이상 10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바. 삭제 <2003. 12. 12>
  -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자.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3.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 이상 5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사.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아. 삭제 <1999. 9. 9>
  -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차.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카. 영 제86조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유의사항☞

-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한 개 국가기관에서 제재받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반드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시행령 제76조제7항)
-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를 제한(임의적용)할 수 있으나 부실시공, 하도

급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요청, 원가계산금액 부적정, 안전시공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경우, 담합, 입찰서류 위·변조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한다.(시행령 제76조제8항)

-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처분한다.(시행령 제76조제3항)
- 부정당업자 처분제도는 법인(개인) 및 그 대표자에 적용하나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업무를 관장하지 않은 대표자는 해당이 없다.(시행령 제76조제4항)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시행령 제76조제5항)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시행령 제76조제10항)
- 부정당업자 제재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4항, 제5항)

## 2) 정부시설공사 입찰무효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

한 입찰

5.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나. 대표자의 성명
    - 다. 사업자등록번호
    -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 영 제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또는 하수급인의 기재가 누락된 입찰 <폐지 2004. 1. 1>
  -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제15조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써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결격사유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조달청계약과-1740, 2004. 9. 30)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공사 예정금액(추정가격에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전기공사법령·정보통신공사법령·소방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입찰로 집행한 공사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금액은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총 공사예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공사에 정금액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한다.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6조(조달청 계약과-1740, 2004. 9. 30)

-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서류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똑똑한 군중 - 스마트몹

군중의 사회 참여도를 말할 때 ‘스마트몹’이라고 한다.

‘똑똑한’을 뜻하는 ‘스마트’와 ‘군중’을 뜻하는 ‘몹(mob)’의 합성어 인데, 이 말은 2002년 10월 테크놀러지 전문가인 미국의 라인골드(Howard Rheingold)가 그의 저서 「스마트몹(Smart Mobs)」에서 처음 씌으로써 일반화 되었다. ‘우매한 군중’ 혹은 ‘고독한 군중’과 대비되는 똑똑한 ‘참여 군중’이 바로 ‘스마트몹’이다.

산업화 이후 군중은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하지만 오늘날의 군중은 휴대 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의 네트워크 기기로 단단히 무장해 똑똑하고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났다.

이제 스마트몹들은 기업의 마케팅 대상에 머물기 보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품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

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불매 운동도 불사한다.

최근 국내 1위의 온라인 게임 회사가 스마트몹의 불매 운동으로 골머리를 앓았었다. 반면에 같은 제품을 쓰는 소비자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의 입맛에 맞춘 상품은 엄청나게 확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스마트몹의 출현으로 기업의 마케팅 현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바빠졌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고객들을 참여시키는 물론이고, 스마트몹의 트렌드를 잡아내기 위해서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다.

똑똑한 군중의 힘, 스마트몹!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상품이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